

##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3(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)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”이란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.

1.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
2.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

제4조제1항제1호라목 중 “제조용”을 “및 콘크리트[레디믹스트콘크리트(시멘트,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] 제조용”으로 한다.

제1장에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분별해체의 대상) 법 제4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,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”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(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)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13조제7호 중 “수집·운반업자”를 “건설폐기물 처리업자”로 한다.

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취하여야”를 “해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종료일 전 30일 이내에”를 “종료일 30일 이전까지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7호의 개정 규정은 중간처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이 영 시행 이후 운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

순환골재의 경우에는 가목 및 라목의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.

가. ~ 다. (생략)

라. 제3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제조용

마. ~ 아. (생략)

2. ~ 4. (생략)

② (생략)

<신설>

-----  
-----  
-----.

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-----  
----- 및 콘크리트[레디믹스트콘크리트(시멘트,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)를 포함한다] 제조용

마. ~ 아. (현행과 같음)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6조의2(분별해체의 대상) 법 제4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,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”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(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)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제13조(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) 법 제21조제7항제3호에서 “수집·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6. (생략)
7. 수집·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
8. (생략)

제21조(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)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: 종료일 전 30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거나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
2. (생략)

제13조(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)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건설폐기물 처리업자-----  
-----  
-----
8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 등) -----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해야 -----.

1. -----  
-----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-----  
-----
2. (현행과 같음)